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제2008-3호)
금융감독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카드 및 캐피탈관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회원 약관 제정(2007.10.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회원 약관 개정(2008.10.15)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회원 약관 개정(2013.08.30)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회원 약관 개정(2014.07.0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회원 약관 개정(2015.09.0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회원 약관 개정(2019.12.3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회원 약관 개정(2020.10.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본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단 내 모든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 1일)을 말한다.
6. “이용일”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결한 이용기간을 말하며,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를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약식약관으로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공단의 의무)

1. 공단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공단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사유 및 처리결과,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3. 공단은 회원이 각종 제반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①약관 및 이용안내
 - ②프로그램내용 및 사용료
 - ③이용수칙 및 안전수칙
 - ④기타 변경사항

제5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 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 시 즉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지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5.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회원의 종류)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프로그램에 대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 2) 이벤트 프로그램
2. “분기별 회원”이라 함은 각 분기별로 3개월간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학기별 회원”이라함은 각 학기별로 유아스포츠탄 프로그램과 어린이 수영단 프로그램에 대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일일 회원”이라 함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신규 회원”이라 함은 공단과의 신규 계약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 회원으로 간주한다.

- ①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한 자
- ② 환불처리 완료 후 재 가입한 자
- ③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계약을 한 자

6. “기존 회원”이라 함은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매월 또는 매분기, 매학기 연속하여 재계약 한 자를 말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당해 체육시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자격의 심의 및 제한)

1.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회원자격을 심의하여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 다른 회원에게 보건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③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자

제10조(회원모집)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 모집형태는 기존회원 우선 모집 후 정원 내에서 결원발생 인원을 신규 회원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 2. 회원 모집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존회원 및 신규회원 모집기간은 당해 체육시설별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정한다.
- 3. 회원모집 형태 및 회원모집기간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4. 회원모집 정원은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가입 신청)

- 1.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거나 인터넷접수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3.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4.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된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사항을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12조(사용료)

- 1.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단, 교육문화프로그램은 공단(당해 체육시설) 운영상의 범위 내에서 유사시설의 사용료를 비교하여 임의로 책정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1개월, 3개월, 학기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이용대상별, 프로그램별, 이용시간대별, 기타 할증 및 할인을 적용은 상위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단, 이용대상별 나이 기준은 각호로 기준 한다.
 - ①유아 : 연 8세 미만
 - ②어린이 : 연 8세 ~ 13세
 - ③청소년 : 연 14세 ~ 19세
 - ④성인 : 연 20세 이상
4.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을 적용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행일 14일 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여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기간 종료 후에 변경된 사용료와 할증 및 할인을 적용 한다.
5.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부일정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한다.

제13조(회원카드)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은 모바일 형태의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카드는 회원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4장 반환 및 변경

제14조(반환)

1. 회원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반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폐강 등에 의한 환급 시
 - ① 전액 환급
 - 2)회원 귀책사유(이사, 질병, 장기출장, 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한 환급 시
 - ①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 전액 반환
 - ②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 ③사용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취소 일 까지의 이용일수 공제후 환급
 - ※“개시일”이라 함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 1일)을 말한다
 -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 3)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취소,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환급 한다.
2.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공제금액 산정 시 주2회 이상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일수 만큼 산정하며, 주1회 이하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4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일수 만큼 산정한다.(단, 유아스포츠단 등은 한 학기 총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3.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공단 소정양식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회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4. 할인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환급 시에는 실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환불신청서의 신청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
단, 환불 신청자의 사유로 인한 경우 환불이 지연될 수 있음.
6.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따른다.

제15조(변경)

1. 회원은 공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프로그램 재접수 및 변경기간(변경은 월 1회로 제한함)
 - ①기존회원 : 당해 체육시설별 신규접수 기간
 - ②신규회원 : 당해 체육시설별 신규접수 기간부터 익월 7일까지
 - ③기타사항 :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일부 종목은 반변경을 제한함
(아쿠아로빅, 효도수영 등 기타 체육센터 지정 종목)
2. 변경은 월1회로 제한하며, 동일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 단, 일부 복합프로그램의 경우 변경이 불가하다
3.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정원마감 시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다.
4. 변경 시 발생하는 증감액에 대해서는 변경 전 금액에 준하여 환급 또는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시설운영 및 이용

제16조(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변경)

1.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 06시부터 폐장23시를 원칙으로 하며, 공단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2. 휴관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공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의대로 변경.조정할 수 있다.
3. 공단은 사전에 정한 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하여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3항에 대한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경우 공단은 회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급하거나 해당기간의 일일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6. 공단은 변경된 사항을 시행일 14일 이전에 안내데스크에 사전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1. 회원이 공단에 사용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①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공단의 승인 없이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
 - ④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⑤강습질서, 배타적회원회합, 부당금액 징수 등의 행위를 하거나 했던 경우
 - ⑥공단이 정한 약관 및 제 규정(회원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8조(시설이용)

1. 회원은 시설 이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시설 이용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정해진 요일, 시간에 한해 일일 1회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료 보관함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사물함이용약관에 따른다.
4. 회원은 주차장 이용 시 해당 프로그램 이용시간에 한해 약3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거나 무단주차 시 강제로 견인조치 할 수 있다.(견인료 회원부담)

제19조(손해배상)

1.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고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한다.

제20조(소지품의 보관)

1. 사용자는 공단 관계직원에게 자신의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대한 소지품의 파손 및 분실 시 공단은 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의 파손 및 분실 시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4. 사용자는 소지품이 귀중품(화폐, 유가증권 등)일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고 보관을 의뢰했을 경우 파손 또는 분실 시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5.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상법)에 따른다.

제21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이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